

『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공설승조당 2관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명시하고 신설된 부부단실의 이용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공설승조당 2관 소재지 명시(안 별표 1)
 -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419-1
- 부부단실 이용 기준을 규정(안 별표 2, 별표 3)
 - 안치 조건 : 부부 동시 안치
 - 관내사용료 적용 :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관내인 경우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도로명주소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기존 공설송조당 포화로 인하여 건립중인 '공설송조당 2관'이 2018년 하반기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, 신설되는 시설의 소재지를 명시하고 새롭게 운영되는 부부단실에 대한 이용료 등 운영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신설되는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